의안번호	제 호
의결연월일	2026. . .

의 결 사 항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(안)

제안연월일	2026. 8. 24.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(안)

의 안 번 호	

제안연월일 : 2026. 8. 24.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구미시의 2025회계연도 세입 · 세출 결산 승인안,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,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· 운영하고자 함.

2. 내 용

가. 구성인원 : 13명(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위원 11명)

나. 존속기간 :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

다. 활동내용 : 2025회계연도 세입 · 세출 결산 승인안,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및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
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

3. 관련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64조(위원회의 설치)

나.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2(예산결산특별위원회)

관련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

제7조의2(예산결산특별위원회) ① 예산안·결산·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 <조문신설 2022.6.15>